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10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9월 1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을 3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(안 제3조)
 - 당초: 2인 이내 ⇒ 변경: 3인 이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질적으로 전문화 및 고도화되고, 양적으로 확대되는 의정 환경으로 인한 입법 · 법률자문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기에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 · 법률고문의 수를 “2인” 에서 “3인” 으로 늘리려는 것임(안 제3조)

2) 주요 내용

-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 - 당초 : 2인 이내 ⇒ 변경 : 3인 이내

3) 검토 의견

-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,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도 복잡 · 다양해지고 있으며, 특히 금천구의 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해서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한 상황임.
-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고,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비와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 · 법률고문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.
- 다만, 입법 · 법률고문 위촉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,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본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,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